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이하 본원)은 수료증 및 교육생 학사관리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알리오니,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또는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수집/이용 목적]

학사관리(국토교통부 입과 및 수료보고 포함) 및 수료증, 비행경력증명서, 업무보고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보유 기간]

DB자료는 영구히 보관합니다. (단, 기타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관)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필수항목을 기재하지 않으시는 경우 교육 운영 및 수료가 불가하며, 선택항목을 기재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되도록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교육 훈련생은 언제든지 본원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생의 개인정보 권리행사(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 (또는 ‘고객정보수정’ 등) 요구를, 삭제 및 처리 정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탈퇴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삭제

- 가. 교육 훈련생은 본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교육 훈련생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시는 경우 교육 훈련생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신형) 등의 신분증명(사본)을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 교육 훈련생의 대리인이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라. 교육 훈련생의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마.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처리정지 등

- 가. 교육 훈련생은 위 제1항 ‘나’에 고지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해 동의하시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선택적으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나. 또한, 본원에 전화상담 등으로 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 본원은 교육 훈련생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본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표 2>

무인기 조종자 양성과정 입과생 서약서

과정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과정(1,2,3종)

1. 본인은 위 과정의 교육생으로 입과 시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의 제반 학사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교육 중에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교관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취급하고, 지시된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3. 본인은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한 즉시 안전 조치토록 교관에게 건의하겠습니다.
 4. 교육기간 중 날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획된 교육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이러한 경우 다른 교육과목으로 대체되어 진행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퇴교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당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교육에 불참한 경우(지각 및 조퇴 3회는 불참 1회)
 - 나. 피교육생의 교육의지 및 열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 다. 피교육생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라. 각 과정별 통과 기준 미달 시
 - 학과평가 : 100점 기준 70점 이상
 - 모의 비행평가 : 종합평가 기준 '우수(B)' 등급 이상
 - 실기체 비행평가 : 종합평가 기준 '우수(B)' 등급 이상
 6. 본인은 비행 실습 교육간 조종미숙으로 인한 기체 파손 시 아래와 같이 기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기체 자체 결함으로 인한 파손은 제외)
 - 가. 1회차 파손 시 : 총 수리비의 “**조종자 20% 부담**”, 교육원 80% 부담
 - 나. 2회차 파손 시 : 총 수리비의 “**조종자 50% 부담**”, 교육원 50% 부담
 7. 비행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계획된 강의 시간 이외에 추가 연장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유발된 사고나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서명 또는 임)